

제429회국회
(정기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상정된 안건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 3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 3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3
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3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3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4
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4
8.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4
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4
1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4

(14시16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특검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법안심사1소위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국회 상임위를 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소위원장이신 김용민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소위만큼은 좀 국회법대로, 국회 관행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건전하게 토론하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방적인 진행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막을 힘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의 의견이 표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의힘은 소위원회 위원을 주진우 위원으로 다시 보임할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이것을, 일종의 절차를 진행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소위원장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서, 그동안 이러한 것은 여야가 서로 각 정당의 뜻대로 존중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 선임의 건도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도 사실은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소위는 막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전체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 선임의 건도 조속히 정상화해서 우리 법사위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소위원회에서도 지금 표결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적어도 소위원회나 상임위 전체회의의 표결은 굉장히 아주 절제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18대에는 4년 동안 17건, 전 상임위에서 표결이 17건 진행이 됐었는데 22대 들어서 금년 2월까지 173건이 표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도 소위원장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 소위원회부터 이렇게 함부로 표결하는 것은 좀 지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이 법안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장점이 있으면 장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원회를 국회법에 따라서 정말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내리신 추상과 같은 명령을 제가 따를 수가 없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요.

저를 특별히 배려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위에 강제 배정하는 것은 국회 관례상으로나 의정활동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위원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위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배제된 위원은 의정활동에 방해를 받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각 정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빠르게 소위 위원들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8.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1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14시22분)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 및 관련 사건 정의 규정 명확화 관련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김건희와 그의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 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 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및 연계 사건으로 확대하고 있고, 장경태 의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건진법사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관봉권 떠지 분실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은폐 의혹 사건, 김건희 및 그 측근의 MBC 및 YTN에 대한 경영 간섭 및 탄압 의혹 사건, 수사대상 각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확대하고 있고 또한 장경태 의원안은 인지된 ‘관련 사건’의 정의를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등 여덟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 명확화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다른 2개의 특검법과 달리 수사대상을 인지된 관련사건이 아닌 관련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안의 제안 이유를 감안하면 현행법상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장경태 의원안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는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을,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심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공무원 수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4명인 특별검사보를 장경태 의원안은 6명으로 증원하고 있고, 현행 40명인 파견검사의 숫자를 서영교 의원안은 70명 김용민 의원안은 60명 장경태 의원안은 70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있으며, 현행 80명인 파견공무원의 숫자를 서영교 의원안은 140명 김용민 의원안은 120명 장경태 의원안은 140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현재 1회 30일인 연장기간을 2회 각 30일씩, 60일로 장경태 의원안에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장경태 의원안 제7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임명된 특별검사보의 사망·해임 시 재임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안과 장경태 의원안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민 의원안과 장경태 의원안은 내용이 유사하나 조항의 위치가 다르고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고 만약 입법화를 하게 된다면 제7조의 조 제목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경태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받은 국수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히 수사 완료,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법에서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검사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이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수사의 특례 신설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입건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제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9조에서 정하는 수사기간 연장 절

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특례 신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성윤 의원안은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용민 의원안은 수사 중 입건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인 또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형벌 등의 감면 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장경태 의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등 세 가지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호 및 제2호는 국가보안법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같고 안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제1항의 요건 규정과 같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이 있고 관계기관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4건의 법률안은 모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되 이성윤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 장경태 의원안은 일반적 적용례와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안 부칙 2조와 같이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장경태 의원안 부칙 제3조와 같이 특별검사가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 법에 따른 수사로 보는 적용례를 규정하되 다만 현행법은 다른 특검법과 달리 ‘관련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관련 범죄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경태 의원안 부칙 제3조 중 ‘특별검사가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을 ‘특별검사가 인지하여 수사한 범죄행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인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 및 관련 사건 정의 규정 명확화 관련 내용입니다.

장경태 의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고 인지된 관련 사건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있으며 전용기 의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제1호와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군인 등을 체포 및 감금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으로 확대하고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에 더해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대통령실 및 제3자가 방해하거나 그와 관계된 사람을 사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사건까지 확대하며 각 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더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확대되는 내용으로 전용기 의원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현행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특검보·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지휘·감독에 더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협조 요청 권한과 관련하여 수사 활동의 지원의 범위를 과학수사 장비와 시설의 제공 및 전문가 지원 등 수사 활동의 지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파견검사·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수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20명인 파견검사를 장경태 의원안은 30명으로 증원하고 있고, 현행 40명인 파견공무원의 숫자를 장경태 의원안은 60명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현행 40명인 특별수사관의 숫자를 전용기 의원안은 50명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1회 30일인 연장기간을 2회 각 30일씩,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는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도 앞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앞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재판의 심리·판결 공개 및 중계 허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하고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되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내용을 순식 해명 특검법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특별검사 등 직무수행 방해에 대한 벌금형 신설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전용기 의원안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형벌 등의 감면 규정도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장경태 의원안과 전용기 의원안 모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되 일반적 적용례와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전용기 의원안 부칙 2조와 같이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장경태 의원안 부칙 3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중 관련 사건의 정의 규정 명확화하는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파견검사·파견공무원 수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관련 내용입니다.

장경태 의원안은 현행 60명인 파견검사를 70명으로 증원하고 현행 100명인 파견공무원 숫자를 140명으로 증원하며 현재 1회 30일인 연장기간을 2회 각 30일씩,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 공소수행 검사·군검사 지휘·감독권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 중 검사·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받지 않아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군검사에 대한 지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경태 의원안은 검사·군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하는 경우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하지 않아도 해당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 또는 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검찰청법과 군사법원법은 검사·군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각각 검찰총장·검찰단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검사와 검찰총장·검찰단장 간 지휘권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고.

김용민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재량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장경태 의원안은 해당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조항 위치와 관련하여 김용민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이첩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제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검으로의 파견 간주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장경태 의원안과 같이 특검 파견 간주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각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 중계 의무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재판장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법원조직법 제59조의 재판장의 중계 허가권을 전제로 재판 중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1페이지, 공소시효의 정지 특례 신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3페이지, 형벌 등의 감면 규정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4건의 개정안 모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이성윤 의원안과 장경태 의원안은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안 부칙 제2조와 같이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개정 법안들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등 특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의 내용은 수사대상 및 인력 규모 확대, 수사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관련 의혹의 규명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특검 수사대상 등은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검사 등의 증원은 현재 시행 중인 3개의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 및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되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장경태·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들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특검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2368호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한 내에 수사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적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문언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 9조 7항에 따르면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의 기소·공소유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 제한 없이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기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은 자수자 등 사법 협조자의 감경·감면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등 유사사례가 존재하고 특검 수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안번호 12283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수 있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199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한정된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인 도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의 의미가 과도하게 넓게 해석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제한 없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서 개정안들의 내용과 같은 수사대상 및 인력 규모 확대, 수사기간 연장 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견검사 등의 중원은 이미 파견된 검사, 수사관 인력 및 그로 인한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민생사건 수사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들은 역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2367호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특검 수사기간 내에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수사본부의 기소·공소유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한 기한 제한 없이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기간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본 개정안은 자수자 등 사법 협조자의 감경·감면 규정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칙 관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안번호 12371호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 시 교정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수용시설 내 영장 집행 시의 지휘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감독권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과 충돌 소지는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이 불명확하거나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해 별금형을 신설하는 취지의 나머지 개정 사항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검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재판의 투명성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81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특검이 이첩받지 않는 군사법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재판에 반영시키고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또한 본 개정안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모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2184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의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참고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의 의미가 과도히 넓게 해석됨으로써 공소시효 정지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12366호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개정안 내용과 같은 수사대상 및 파견인력 규모 확대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인력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생사건 수사 자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지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위와 같이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본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와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의 기소·공소유지는 협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기간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은 자수자 등 사법 협조자의 감경·감면 규정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칙과 관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2434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관련하여 본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재판 중계 의무화는 법원의 비공개 심리 결정 권한을 규정한 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법원조직법 등 협행 법체계와의 조화 측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특검의 수사대상 범죄 중 외환죄 등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3심과 구별하여 1심만 중계를 의무화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특검법 모두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 부분과 파견검사의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개별 조문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해서 이 심사자료에 반영돼 있습니다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특검법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법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관련 사건의 정의 규정을 둘 것인지와 관련해서 지금 1~3호는 형사소송법상 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따온 것 같고 그다음에 제7호 부분은 형법에 있는 독립행위의 경합에서 그 문구를 따온 것 같은데 이것이 특검법에 있어서 관련 사건을 확대하는 거와의 연관성에 있어서 과연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1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인이 범한 수죄'라고 돼 있는데 좀 더 과도한 표현을 하자면 직권남용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 죄는 같은 관련 사건으로 봐야 할지 이런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세 법률안 모두 수사기간 종료 후에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를 해서 공소유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협행법 체계상 국가수사본부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협행 형사소송법과의 충돌 여부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는 법률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피고인에 대한 어떤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와 관련해서는 이성윤 의원님 안에 따르면 해외 도피가 아닌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김용민 의원님 제출하신 안에 따르면 국외에 있는 경우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형사소송법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형벌 등을 감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세 법률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순직 해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만 있는 규정에 대해서 두 가지씩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재판의 공개 및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도 중계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공소수행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주체가 중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첩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순직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전용기 의원님 안에 보게 되면 별금형을 추가하는 부분이 들어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순직 해병 특검법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동일하게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에 내란 특검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재판의 중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특검이나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허가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1심은 중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모든 사건을 사건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다 중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내란 특검법이 종전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란 특검에서 아직까지는 중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파

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모든 사건을 중계하게 되면 중계를 위한 물적·인적 장비가 구축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고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간 도과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현실적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토론 시간인데요. 지금 검토의견을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3개의 특검이 중첩되는 영역들이 있으니 토론은 그냥 한 번에 다 진행을 하고 토론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특검법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토론하시면 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민주당의 3개 특검법이 출범할 때부터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사기간이나 파견 인원 면에서 정말 이것은 과도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특검의 사례를 보면 최순실 특검 때가 최대 120일이었고요 드루킹 특검 때가 최대 110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이나 이미 연장기간을 포함하면 17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태고, 그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미리……

이게 아마 최대 200일까지 느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원래 금년 말까지 정도로 수사가 다 종결되는, 연장하더라도 종결되는 구도였는데 굳이 해를 넘겨서까지 내년 초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개정을 해 버리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라는 것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거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 3개 특검 이용해 가지고 민주당 입장대로 국민의힘 쪽, 과거 정부 쪽 인사들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당장 조은석 특검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원내행정국 이런 데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 대상 장소나 물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범죄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특검을 이렇게 미리 연장시켜 놓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수가 아닌가. 별다른 성과도 없이 시간만 끌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민주당 입장대로 특검 계속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파견검사나 파견공무원 다 검찰에서 가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검찰 그렇게 싫어하면서 특검에다가는 검찰청의 인원을 대거 파견해 가지고, 인원으로 따지면 1개 특검당 서울 시내에 있는 지방검찰청 형사부 전체 인원 한 두세 개를 합친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검찰청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대겠다고 오늘 특검법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도 입장을 밝히셨지만 아주 점잖게 그냥 밝히신 것 같아요. 보면 나중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공소유지를 하도록,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법원행정처의 성격상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마는 명백하게 이것은 형소법

의 규정과 충돌하는 거지요. 국가수사본부장이 어떻게 공소유지를 합니까, 검사가 당연히 공소유지를 하도록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법체계하고도 안 맞는 법안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정치적으로 3개 특검을 국민의힘 죽이기에 활용하겠다는 이런 노골적인 법에 대해서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잠시 하시기 전에요 이게 국가수사본부의 공소유지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혹시 장경태 위원님이나 누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경태 위원** 이 조문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기간 종료 후에 사건의 인계 기관으로서 국수본이 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특검의 지휘하에…… 공소 제기와 유지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지 국수본이 하는 부분은 표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불분명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장경태 위원** 예, 보완하겠습니다. 소위 토론 과정에서 보완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를 더 하는 거지……

○**장경태 위원** 수사는 국수본이 하되 공소 제기와 유자는 특검이 하는 것이지요. 검사가 하는 것이 맞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토론을 계속 이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일단 먼저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법안소위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3개 특검의 공통적인 사항이 죽 있고 그리고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그걸 뭉뚱그려서 각각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소위원장 김용민** 충분히 말씀 들을게요.

○**나경원 위원**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통적인 것도 대강 한 6, 7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법안을 심사할 때 조문을 하나씩 넘겨 가면서 심사하기도 하는데, 지금 3개 특검을 한꺼번에 심사하는데 굉장히 공통적인 게 많다 보니까 수사대상 확대라든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 확대라든지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끊어서 논의하지 않으면……

지금 그냥 갑자기 국가수사본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검의 수사 종료 후에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을 하는데 그러면 공소유지는 계속 특검이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경원 위원** 그러면 특검은 계속 활동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긴급해서 이 법안소위의 진행에 관해서 동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안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씩 좀

끊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저희는 전체적으로 3개 특검을 재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간이 한참 남아 있고 이미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했던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저희 국민의힘 당직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사의 입회를 위해서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특검 진행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장해 가면서 할 수사 내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먼저 크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검사들이 파견돼서 사실상 검찰청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세금 문제입니다. 지금 추계가 다 다르긴 하던데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용 또 지방 선거용 기간 연장이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끊어서, 우리가 자구로 조문으로 끊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 저도 잠깐 운영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려보면요, 저도 말씀하신 취지로 소위 심사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저희가 쟁점이 많은 법을 처리할 때는 해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고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문별로 나눠서 혹은 쟁점별로 나눠서 토론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종합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필요하면 제가 쟁점을 좁혀 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틀림없이 야당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말씀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문별로 하다 보면 오히려 처음부터 전체 입장은 다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쟁점별로 다시……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쟁점별로, 그다음에는 하나씩 종합 의견을 말씀하시고 쟁점별로 가져와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저희가 의결을 한다라고 하면 쟁점별로 찬반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니 쟁점별로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이어 가기 전에 제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미리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는 파견검사나 공무원 파견 등 때문에 일선 청 업무 공백 부분이나 민생사건 지연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건 처리가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오늘 회의 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아까 중계 부분에 종합적으로 신중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요. 법에 중계가 들어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현재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라도 직접 그 재판을 한번 보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할 때 중계를 했더니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가 쟁점이었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국민들이 직접 알겠더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중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만큼 저희는 그것 더 논의는 하겠지만 그러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회의 중에 준비되시면 한번 말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

○서영교 위원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특검법을 기본적으로 반대했던 분들이시지요. 특검법을 반대하고 개정법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행 과정 속에서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특검법도 반대했던 분들인데 개정법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면 진행 과정 속에서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 위원장께서 잘 보시고, 그리고 발언시간이…… 지금 우리가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언시간이 길지 않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사진행 말씀도 좀 드리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서영교 위원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특검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든다. 대한민국의 이 내란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당시에 한은의 RP 매매가 151조였어요. 12월 4~6일 외국인이 팔아넘긴 게 수조 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어디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환율, 1500이 넘어갔어요. 이것 정리해내는 일이 범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직도 특검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려고 하면…… 그리고 정권 바뀌었어요. 그러면 빨리 내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제가 연장하고 증원하는 법을 냈는데요. 아니, 건진에게 관봉 떠지 쳐진 그 관봉 돈 수천만 원, 1억 6500입니다. 그 관봉, 생각을 해 보세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서영교 위원 돈이 뭉텅이로, 은행에서 나온 관봉 쳐진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떠지가 없어졌어요. 제가 수사 한번 여쭤볼게요. 5000만 원짜리가 여기 딱 만들어서 관봉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 5000만 원 되는데 이거 셉니까? 이거 센다고 떠지를 버려 버렸대요. 이것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사가? 이게 건진법사 집에 말이에요, 은둔처에 관봉 쳐진 떠지가 있는데 그것을 세겠다며 떠지를 버렸대요, 검사·수사관이 남부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관님? 수사할 때 그것 그대로 합니까, 이것 없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떠지 등은 중요한 수사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분

실되게 된, 없어지게 된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염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저 말단의 수사관이 없앨 수가 있습니까? 이 없애는 것은 위에서 다 보고 지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검사장까지, 아니 그 위 김건희·윤석열까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수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것 조작이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관봉 띠지의 끈을 없앴다고, 띠지에 적혀 있는 어디에서 받았고 어떻게 되고 다 적혀 있는. 그러면 이것 검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기본 만료기간이 9월 28일이에요, 90일이라서. 두 번의 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며칠 안 남았어요. 만료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가다가 엄청난 일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것들을 수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를 위해서 지금 1, 기간이 연장돼야 된다. 2, 이것 너무 일이 많아요. 김 예성은 누굽니까, 도대체? 김건희 씨의 돈의 저수지, 집사랍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의 인력, 검사 인력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인력으로 다른 수사를 못 한다.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합니까, 경찰이 수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지금 우리 내용으로는 윤석열이 수사와 기소 다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대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내란까지 가서 국민의힘 수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장해야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들어나야 하고 수사관이 들어나야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목소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3개의 특검에 기본적으로 기간 연장, 그다음에 두 번째 인력 연장 이 부분 잘 살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기간 연장, 인력 증원, 이것 반대할 이유가 누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막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박은정 위원님이 이번에 먼저 손 드셨으니까 하시고……

○나경원 위원 같은 여당인데 저쪽에 앉히세요, 저쪽에. 여당이지 무슨 야당이에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여당 아니지요.

○박은정 위원 야당입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아까 먼저 드셨다고요?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하시고 박은정 위원님 하시는 순으로 할게요.

○조배숙 위원 차관님, 지금 전체 검사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정원은 2200여 명입니다만 현원은 2000명이 좀 안 됩니다.

○조배숙 위원 2000명이 안 된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1900명 대입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수사인력은 몇 명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부장급 이상 간부를 약 40~45% 보기 때문에 부장 이하의 검사는.....

○조배숙 위원 실제 일선에서 수사 담당하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수사 담당하는 검사가 한 1100~1200명 남짓이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재 120명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분의 1이 투입됐네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중에서 공판검사들은 재판을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판검사 중에서는 수사검사를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수사만 담당하는 검사를 한다면 약 1200명 중에 조금은 더 부족한.....

○조배숙 위원 한 1100명 정도?

○법무부차관 이진수 더 부족한 인원이 되는데요. 공판검사의 비율을 한 20~30% 정도는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배숙 위원 20~30%요? 그러면 120명이면 일반 민생은 상당히 지연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떨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특검이 발족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검사들의 사건부담량이 지금 굉장히 과중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인력만 많다면야 몇 명이라도 투입을 하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또 민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검사인력을 더 추가로 늘린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정말 이게 여당이 하는 특검이에요, 아주 역사적으로.....

○소위원장 김용민 저희 야당일 때 했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특검법을 통과시킨 게 6월..... 선거 끝나고 그다음 날 아니었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매머드급 이것을 여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개정안을 보면서..... 우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형사법 체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하면 그 기간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외국에 있지 않고 내국에 있어도 그리고 또 그 사유가 그 사건 범인의 도피가 아니라 다른 사유,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도피 사유도 확정이 됐는데 국내인지 국외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렇다면 사실상 이 특검 수사대상 범죄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소시효 없는 그런 범죄가 됩

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가 특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저는 이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 이 공소시효 특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래서 제가 말씀……

○조배숙 위원 평등권 침해와 그다음에 과잉 금지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것은 소급 입법 금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래서 공소시효 정지 특례에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 34쪽에 저희 기관의 의견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비상계엄 특검의 경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하지 않아도 특검 검사는 검찰과 군검찰이 공소유지하고 있는 공판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특검 검사가 그냥 일선…… 이첩하지 않아도 그 관련된 사건이면 지휘를 한다? 그러면 그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도 받고 특검 검사의 지휘도 받는가? 그다음에 또 군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법의 원칙을 깨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파견검사가 수사 종료된 뒤에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파견검사는 특검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수사기간 중에만 임시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파견검사는 수사의 보조 인력일 뿐이고 공소유지는 특별검사의 지위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특검법 제7조제6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에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제9조제7항에 보면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 종료 후에는 이 사건을 파견검사가 아니라 그 해당하는, 인계받은 검찰청 검사장 그쪽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 종료 후에도 파견검사가 소속청에 복귀를 안 하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토록 수사·기소 분리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민주당 스스로 수사와 기소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을 자인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170일간의 수사기간을 넘어서 사실상 종결 때까지 수년간 계속 특검이 파견검사 지휘하면서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발상이 검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검찰청을 없애 버리겠다 이런 주장하고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원래 헌법에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부여했는데 특검은 예외적으로 임시적·한시적·보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기간을 법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 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못 박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종결까지 수사가 종료가 되지 않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 못 했을 때는 계속 지휘할 수 있다, 물론 피의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저는 특검 제도가 원래 임시적·한시적 이런 제도의 취지로 봤을 때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 어쨌든 저희들은 특검법에 대해서도 원래 반대를 했지만 저는 이 개정안을 보면서, 이게 법률적인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지금 여러 가지 의견 나오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좀 보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이 내란 사건 그리고 내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관여가 없습니까? 아무런 반성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을 전제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굉장히 무관한 조직인 것처럼……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그것 부적절한 말씀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그것은 협박이지.

○**조배숙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면 민주당도 책임이 있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마치 무관한 조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상관없었습니다’라는 태도의 접근은 지금 이 특검법이 출발했고 여지껏 특검이 진행돼 왔던 이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발언 하셨는데 이게 내란 특검을 지칭하시는 것 맞지요, 위원님?

○**조배숙 위원** 저희들은 내란 특검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내란 특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칭을?

○**조배숙 위원** 예.

○**나경원 위원** 내란과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렇게 안 짚으셔도 돼요.

○**소위원장 김용민** 이게 지금 정식 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곽규택 위원** 이게 무슨 정식 명칭이에요?

○**조배숙 위원** 정식 명칭은 그게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 마음대로지요.

○**박준태 위원** 약칭이지요, 약칭. 민주당이 만든 약칭이지요.

○**곽규택 위원** 편의로 고친 것이지, 편의로.

○**소위원장 김용민** 통과되어 있는 법의 정식 명칭인데 이것마저 부정하시면……

○**박준태 위원** 그러면 풀네임으로 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 마음대로지요.

○장경태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토론 이어 가시겠지요. 하십시오.

○박은정 위원 지금 약간 여야가 바뀐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무부 편을 들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참 혼란스러운데.

○조배숙 위원 아니, 편드는 것 아니에요.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스텐스 잘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야당이세요. 야당이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법무부 편들고 그러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박준태 위원 우리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여당이에요?

○박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비판한 것, 제 페이스북 보세요.

일단은 지금 채 해병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재판 중계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재판 중계 규정이 없어 가지고 같은 취지라면, 지금 내란 특검에 재판 중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계시는데 김건희 특검법에도 10조에 채 해병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지금 내란 특검법 11조에 있는 4항·5항이 김건희 특검법 3항·4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말하자면 재판장이 특검 그다음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계 허가 부분 그다음에 허가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는 이 규정과 그다음에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이 전용기 의원님안이 김건희 특검법 10조 3항·4항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저도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또 저희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야당 혹은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반대하고 개정안을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토론 과정에서 속기록에 잘 남겨서, 2015년에 법무부차관이었던 김주현 차관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로 해야 됩니다’라는 속기록이 남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역사 속에 길이 남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야당을 탄압했다, 탄압 법안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이 탄압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요, 특검이 어찌 됐건 잘 수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내란 정당이라고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엄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수사대상인 정당으로서는 좀 감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법무부차관님, 지금 검사 수가 많이 파견돼서 민생범죄 수사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저희가 야당일 때도 당연히 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가 몇 명이냐고 질의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 수를 주지를 않아요. 공무원

의 소속 직제를 해당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했는데도 안 줬습니다. 그것은 저는 검찰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애초 작년에 민생범죄가 없었고 중앙지검에 사실상 지검을 하나 통째로 옮겨놓은 것처럼 해서 야당을 탄압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만약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인력 충원을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범죄를 핑계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작년에 워낙 지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는 이 3대 특검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견검사와 수사관 인력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110여 명의 검사가 파견이 되어 있는데 이 3대 특검 법안의 중원안을 합치면 검사만 50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장경태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최대치의 실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도 전체를 다 수용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그것은 특검의 권한으로 저도 얘기하고 싶고요.

행정처 차장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관련 사건 관련된 규정에서 2조 수사대상의 3항 1·2·3호는 형소법 등을 준용해서 삭제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해외 도피 피의자의 공소시효 정지 관련돼서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 또 특검 수사의 특성상, 과거에는 검찰이 캐비닛에 넣었는지 어디 반환용 창고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창고에 넣어 놓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기소·불기소도 결정 안 한 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2017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상계엄 문건이 작성됐던 조현천 기무사령관, 2017년 12월에 해외 도피해서 23년 3월까지 5년 이상을 해외 도피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피의자 혹은 피혐의자 혹은 아직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특검이 수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실제…… 포고령 1호 아시지요? ‘전공의들을 처단한다’ 법률 용어도 아닌데. 이런 문건을 누가 썼는지도 아직 밝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컴퓨터 뭐 썼는지도 몰라요. 그게 아래한글인지 워드인지도 모르는데,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만약 이 사람이 해외 도피하고 있으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풀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사기간 종료 이후에 어떤 특정 수사기관 또는 공소유지 기관에 다 이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형소법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준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해외 도피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다 규정이 있지만 특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현천 씨 같은 경우는 5년간 해외 도피 이후에 지명수배 해제되고 귀국 이후에 윤

석열 정권에서 연금 2억 바로 수령했습니다, 이를 만인가 이삼 일 만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차장님도 당연히 형소법 기본 원칙 준용해야 된다고…… 법원의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수본부장의 공소 제기와 유지에 대해서 법안을 좀 보완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성안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조항 7항의 문구를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자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8항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서는 제 11조를 준용한다’라고 수정 전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준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준태 위원** 나경원 위원님 먼저 주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요, 나경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내란 특검법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법안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또 서영교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사실 오늘 법사위에 와서 놀란 것이 ‘내란’을 그냥 입에 달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란이 확정됐습니까? 내란죄가 확정됐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내란죄가 확정됐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1심 재판 중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잖아요. 1심 결과가 나와서 내란죄가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란·외환 혐의에 관한 진상규명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고 내란 앞잡이, 내란 공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까? 다 법조인들이 시잖아요.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갖고 지금 우리가 내란 죄가 확정된 것으로……

○**이성윤 위원** 내란 행위는 확정됐어요.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란 행위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는 알겠지만 지금 내란 죄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내란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내란죄가 확정된 것으로 전제로 해서……

○**소위원장 김용민** 파면은 확정됐지요.

○**이성윤 위원** 아니, 내란 행위가 확정됐잖아요.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되는 겁니까?

○**박균택 위원** 그것은 상식으로 아는 문제지, 뭘 형 확정을 말씀하십니까?

○**박준태 위원** 아니,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무슨 상식이라고 그래요, 재판 결과가 안 나왔는데.

○ **김기표 위원** 단어를 쓰는 것은 형이 범죄로 확정되어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곽규택 위원** 원래 특검 제목이 혐의예요, 혐의. 원래 혐의라고요, 혐의.

○ **이성윤 위원** 현재에서 확정이 됐어요, 현재에서. 현재에서 확정해서 윤석열이 파면됐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 **소위원장 김용민** 탄핵은 확정됐습니다, 탄핵은.

○ **나경원 위원**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왜……

○ **박은정 위원** 그러면 내란 아닙니까?

○ **곽규택 위원** 아니지.

○ **소위원장 김용민** 계속 발언 이어 가십시오.

○ **나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어서 특별재판부까지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사도 마음대로 그다음에 재판도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법무부를 굉장히 압박하시던데, 법무부 차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파견검사 얘기를 운운하다가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하는데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무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검사 수도 유지하고 그것은 당연히 법무부 차관으로서 할 수 있었던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법무부 차관 이진수** 예, 그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관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 **나경원 위원** 의견을 정확하게 소신 있게 발언하세요. 위원장 한 말씀에 또 위축돼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소신 있게 발언해 주십시오.

○ **법무부 차관 이진수** 제가 처음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바와 추가로 설명드렸던 바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나경원 위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법무부에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치소의 CCTV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설치를 하지요?

○ **법무부 차관 이진수** 구치소의 CCTV는 수용자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교도행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CCTV를 지금 가동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나경원 위원** 그런데 저희 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치소에 가서 CCTV를 열람하는 결정을 하고 어제 열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실은 국회의 권한 밖의 의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적어도, 법무부에 관한 소관 사항이 우리 법사위의 소관 사항이지만 수사나 기소에 우리가 일종의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을 봐도 사생할을 침해하거나

나 또는 소추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그 행위는 실질적으로 교도행정 운운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추를 압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권한을 넘는 의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봅니다.

개다가 서류제출 요구가 또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도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의 권한을 넘는 부분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서류를 내주든지 말든지 판단을 해야지 이것은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어제 구치소 관련된 사항들은 법사위에서 의결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에서 협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의결은 했는데 그 의결이 법사위의 권한을 넘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이 부분은 오늘 본건 법안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지 않으니 이 정도로 하시고……

○나경원 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발언시간도 3분이든 5분이든 해 주십시오. 저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법안을 자꾸 이렇게 졸속하게 심사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넘는 범위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역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보다 두 배로 말씀하셨는데 졸속 심사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기왕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법무부차관님, 어제 영상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상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 마치 우리 법사위에서 유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법사위원들이 가기 전에 시연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이런 오해가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차관님, 전국 검찰청이 한 18개인가요, 본청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검이 18개입니다.

○김기표 위원 지검이 18개지요?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인지부서라고 하는 것이 특수1·2·3·4부까지 있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은 3부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금 3부로 운영돼요? 아니, 또 특별공판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재판 담당하는데 사실상 특별수사한 것의 공판을 담당하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기표 위원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검찰개혁이나 특검이 온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번 정부에서 이른바 검찰이 정적 죽이기에 동원돼서 사실상, 일반 인지수사의 순기능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든지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될 검사들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인지부서에 있는 검사들이 모두 몰려들어 가지고 정적,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탈탈 터는 데 동원됐단 말이지요.

저는 그게 현재 검찰청 등의 18개 검찰청 그다음에 큰 차치지청이나 이런 데 특수 하는 검사들 모으면 열추 이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전 정권에서 특수검사들이 다 그렇게 수사를 했던 거고.

그러나 지금은 검찰의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지수사를 안 하고 있지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사실 검사들이 그 숫자가 가서 특별검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많다면 몇 명 일부 더 많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110명, 아까 공무원 99명이 파견이 돼서 일선 민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응답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다만 지금 현재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고 김건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규명하고, 역사적으로 이것을 몇십 년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단기간에 빨리 끝내자는 것이 특별검사 제도의 목적이고……

○나경원 위원 내란은 무슨 내란이야?

○김기표 위원 내란 행위 맞습니다. 현법재판소가 내란 행위라고 해서 윤석열이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위원 내란은 무슨 내란이에요, 내란은?

○이성윤 위원 결정문 읽어 보세요, 좀. 내란 행위라고 명백히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내란은 무슨 내란이에요? 내란죄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윤 위원 지금 내란 행위를 이야기했지 내란죄 얘기 안 했잖아요.

○나경원 위원 내란죄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박준태 위원 내란 판단했으면 재판 왜 해요, 그러면?

○김기표 위원 일단 제가……

○소위원장 김용민 좀 경청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그래서 이게 수사기간을, 특별검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사건이 벼거우면 조금이라도 숫자를 단기간이라도 늘려서, 이게 몇 년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려서 빨리 이것을 매조지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더 늘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기간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수사환경이 굉장히, 수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사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표현하지요. 압수수색을 해 온다 하더라도 포렌식하는 데 몇 달 걸려 버리고 계좌 추적하는 데도 옛날처럼 은행이 그렇게 빨리빨리 협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압수수색해서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압수 자료가 안 넘어오고 이렇게 때문에 옛날에 인지수사 하던 때와는 지금 약간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기간이 오래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기간을 늘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저는 찬성을 하고요.

일단 총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법안을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관계기관에서 의견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논의에, 제가 자료를 던지는 것이지 이게 뭐 결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게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이런 것은 사실 이게 병합 관련 규정이지요. 재판적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특검 수사가 잘못하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수는 있어요. 8호 같은 경우에는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해서 1개의 목적을 위해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이런 것은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관련 사건에서 의미가 있으나 재판적 규정을 들여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은 좀 신중하게 논의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검사 또는 군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경우에 이첩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를 수행하여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규정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의 의사표시 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특별검사가 어떤 사건을 지정해서 어떤 모 검사 어디 모 행정청에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한다.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것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완비되어야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수본으로 넘어가는 문제, 아까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께서 국수본 수사체제에서…… 그것은 약간 오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류가 생겨서 그렇게 법률 조항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특별검사가 한시적인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데요. 제 의견은 특별검사가 임의적인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평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송치를 검찰청으로 해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평시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특별검사가 또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어떤 프레임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 그러면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서 남아 있는데 그 잔여 수사에 대해서도 과연 수사지휘를 받게 하고 공소제기를 하게 할 것인가는 물론 입법정책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완전히 평시로 돌아간다면 검찰이 송치받아서 기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다, 그래도 그것도 특별검사가 해야 된다 그러면 특별검사가 송치받아서 기소를 하든지. 그런데 문제는 특별검사보는 다 그만두고 과연검사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검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 참고인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인의 범위가 과연 명확하게 특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국외 도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들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데 참고인이라는 것이 지적한 대로 범위가 어떻게, 누구를 참고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형별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기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2호가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행정처인가요 거기서는 이 고발의 의미 그다음에 이게 고발이 유의미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저는 그것은 특별검사가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법안대로 가도 되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몇 가지만 더 하지요.

그다음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에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조항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명확히,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 범위에 속해 있지만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는 저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자칫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이미 수사 범위에 충분히 포함된 사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가능한 좀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미……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게 수사 범위가 아닌 건데 수사 범위로 넣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 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다음에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수사의 특례도 아까와 같은 전체적인 프레임 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쟁점별로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말씀을 나눠 보고, 그 전에 아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는 제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자료들 챙겨 봐 주시고요.

법원행정처는 하나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게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조금 이따 말씀 한번 해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중계 아니라 녹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맞습니다, 녹음·녹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부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 보고요, 정회했다 5시쯤에 다시 회의를……

○**나경원 위원** 저희 당에 대한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5시쯤에 회의를 다시……

○**박은정 위원** 1시간 10분 후에요?

○**소위원장 김용민** 1시간 10분 후에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변동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계속 이어 갈 예정인데 지금 법무부에서 자료를 책상 위에 옮겨 두신 것 같습니다. 이것 위원님들 참고하시면서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확인된 게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중계 의무화 관련해서 대비 방안……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과 현재 녹음·녹화가 되고 있는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일단 지금 규정상은 속기와 녹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소된 재판부가 여러 군데라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속기와 녹음 또는 녹화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속기는 반드시 하고 녹음 또는 녹화로 돼 있는데 기소된 재판부가 여러 군데라서 현재 확인 중에 있어서 결과가 취합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되는데 말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토론을 이어 가는데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나경원 위원** 저희 국민의힘은 부득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저희 당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특검이 결국 야당 탄압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영장 내용을 보면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부를 압수수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엄과 관련된 시기도 아니고 이렇게 과다한 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적인 특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 연장하는 일체의 논의에 대해서 저희는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위원들이 내란 행위가 현재 결정문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계엄에 대한 헌법 위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한테 계속 내란 앞잡이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말씀은 좀 자제해 달라고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아무리 읽어 봐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읽었으면 다시 제시해 주실 것

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하고 똑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도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배치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장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교섭단체가 분명히 주진우 위원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월권이다. 그래서 이것 간사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왜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김용민 간사께서는 아마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김용민** 비공개는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왜 공개하지 않나요?

○**소위원장 김용민** 언론의 취재를 불허한 것이지요.

○**나경원 위원** 언론 취재를 불허하는 것에 무슨 근거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일반적으로 소위에서는 언론 취재를 시작할 때만 일부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나경원 위원** 공개를……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공개·비공개는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공개회의고 공개회의라는 것은 속기록이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

○**나경원 위원** 공개·비공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57조 5항에 따르면 소위원회도 공개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에 비공개를 할 때는 의결하는 건데요.

언론 취재 부분에 있어서 공개한다면 언론 취재를 왜 불허하는지 그것을 위원장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것이 맞을지 여기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언론 취재도 당연히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언론 취재를 불허하는 것이 맞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 논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이석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아까 기간 연장이랑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도 반대 입장이시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나경원 위원** 예, 저희는 모두 반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걸 참고해서 논의를 저희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박은정 위원** 회의는 참석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준태 위원** 와서 한번 보세요. 2층 와서 보세요, 압수수색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은정 위원**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거지요. 수사를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빨리 가셔 가지고, 저도 말씀하신 것에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가 버리셨네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위 구성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님께 직접 말씀하셔야지 저를 불잡고 저한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 여부 부분은 이미 공개하고 있고 방송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활용해서 방송의 일부 허용을 여지껏 계속 관행대로 저희가 해 왔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토론을 하는데요.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저희가 의견들을 개략적으로 한 말씀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쟁점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특검법상 공통된 쟁점이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김건희 특검법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의 확대 및 관련 사건 정의 규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 안이 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말씀하십시오,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일단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당연히 지금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물론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수사 범위에 포함해 있는 내용들이 법안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할 건 없고 그래서 수사 범위는 추가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들어 있는 내용들로도 다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사건은…… 그런데 다만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께서 내신 법안을 보면 조금……

○**소위원장 김용민** 4페이지지요?

○**김기표 위원** 예, 4페이지. 저는 내란 특검법의 8페이지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 법안이 1호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이것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할 소지가 있어서 빼는 게 좋겠고 나머지 이하도 비슷한 사정으로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호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역시 빼야 될 것 같고요. 4호, 6호는 남겨 두는 게 맞는 것 같고 7호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이것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호는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소·고발된 사건도 사실 당연한 관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환기하는 취지로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도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따로 성안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장경태 의원안에는 18호에 ‘수사대상 제1호부터 17호까지의 각 사건에 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군, 건진법사를 상대

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대상 사건으로 두고 있는데 이걸 관련 사건의 범주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수사대상 범죄에서는 확대하지 않고 관련 사건 범주로 해서 규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일한 취지가 명태균 특검법에도 비슷하게 있는데 수사대상을……

○**김기표 위원** 명태균이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명태균이 아니고 채 순직 해병 특검법에도 수사대상을 늘리면서 관련 사건 범주를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취지로 고소·고발 사건까지 관련 사건으로 넣어서 하자라는 말……

○**김기표 위원** 예, 같은 취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지요, 윤석열 특검도 거기 지금 관련 사건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태 위원** 아니요, 다른 거 추가로……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쟁점으로?

○**장경태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 쟁점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전문위원님, 저기에 대해서 조문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사대상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서두에서도 1·2·3호에 대해 제외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말씀드렸고요. 7호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법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28페이지에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로 인계 부분에서 7항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정하고자 합니다. 7항에 '제6항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라고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 뒤의 문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되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이 공소유지 건에 대해서는 25페이지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하면서 파견검사 또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건이 어찌 됐건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특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 특검법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법, 또 다른 특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채 해병 특검 추가 수사는 필요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추가 수사가 필요……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 없이 공소유지지만 한다면 파견검사가 가능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꼭 특검까지 나서서 공소유지할 필요 없고 파견검사가 하게 하되 만에 하나 추가 수사할 사안이, 대상이 생기면 그 부분은 수사지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특검법, 3개 특검법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여러 특검법의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특검법의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기준으로는 라항, 28페이지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결국 기준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현재도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인계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인계를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특별검사가 거기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개정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장경태 위원** 그 장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배당받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면 어떨까……

○**소위원장 김용민** 문구를 그렇게 수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위원장님, 문구 조정 차원에서 개정안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다 동의하시니까요.

쟁점이 갑자기 뒤로 확 갔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김건희 특검법을 기준으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중첩되는 게 많은데 김건희 특검법이 내용이 많으니.

김건희 특검법 16페이지 나항인데요.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공무원 수 확대하고 수사기간 연장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과 파견검사를 현행 40명에서 60명 혹은 70명 그리고 파견공무원을 현행 80에서 120명 혹은 14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주시고 수사기간 연장은 그다음에 논의해 보시지요.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아까 법무부에서 검사 미제사건 수 추이 자료를 냈는데요. 현재 110명이 파견됐는데 이 정도 사건 지연이 있다고 얘기를 해 왔어요. 아까 국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마치 수사권이 지연되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만 검사를 무려 150명이 넘게 투입했다는 보도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는 검찰이 이렇게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이 지금까지 3년간 차곡차곡 수사를 하지 않고 미루는 바람에 또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범죄 사실이 차곡차곡,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16개까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검사를 이렇게 늘려도, 최대 실링으로 늘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단지 시간을 줄여서 하는 거니까요. 정해서 하는 거니까 장경태 의원안 정도로 최대 인원을 늘리는 게 적절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어차피 상한선이니까 최대 늘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보를 늘리는 안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이?

○이성윤 위원 그 부분도 찬성합니다.

○김기표 위원 특검보도 6명으로 늘리는데 기존 임명된 4명의 특검보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기존의 특검보까지 포함해서 12명인가요, 1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6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본문에서 정하고, 다만 부칙에서 기존에 임명된 4명은 기존 법안대로 하고 나머지 2명을 임명하는데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해서 2명을 임명하는 식으로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지금 현행 개정안은 2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1항으로 다 합치고 부칙에서 경과규정처럼 두자는 말씀이십니까?

○김기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동의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구를 그렇게 한번……

○전문위원 박병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기표 위원님께서 기존에 임명되신 분들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부칙에 넣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용례 조항을 둘 때 기존에 8명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임명되신 네 분은 기존 법에 의해서 어차피 그 법적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요. 적용례에서는 이 법이 개정되면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2명을 임명한다’라는 조항만 넣어 두면 기존 분들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소위에서 의결하신 대법관 증원하는 경우에도 부칙에서 별도로 기존에 있는 대법관 숫자를 늘렸는데 기존에 있는 대법관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대법관의 지위를 유지한다든지 문제없다든지 그런 표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증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동일한 특검법, 법안이 대법원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런 취지라면— 지금 속기록에 이거 남겨 놓으십시오—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현재 임명되어 있는 4명의 특검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임명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 임명할 2명의 특검보에 대해서는 4명의 특검보를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께서 2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취지인 것 이지요.

○전문위원 박병섭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전문위원 박병섭 제목은 ‘특별검사보 추가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전단의 개정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용례를 두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차관님이나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쟁점을 정리해 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인력은 지금 저희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수사인력과 관련해서 채 순직 해병 특검법을 보면 파견검사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과 파견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특별수사관을 현행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안 이렇게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박은정 위원 예, 그것은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늘리자는?

○박은정 위원 예, 늘리는 안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늘리면 지금 발의되어 있는 30명, 60명, 50명 안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박은정 위원 예, 그 범위 내에서니까요.

○김기표 위원 예,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50명으로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규정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예, 크게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이쪽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나요?

○박은정 위원 채 해병 특검에서도 요구는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국회의장님께 그 요구를 문건으로 전달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반영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가 보면 다른 데는 일이 너무 많고 많아지고 있는데 그쪽은 그래도 정리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래도 늘리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용민 이견을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서영교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군데는 많이 아는데, 일이 많아서 지금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을 별로…… 그런데 지금 의견이 왔다고 하니까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마 그러셨겠지요.

수사기간도 이제 같이 연동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수사기간도 아마 필요한 것 같아서 수사인력과 기간을 같이 늘려야 하는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 특검 관련해서 인원을 파견검사 60명에서 70명으로 그리고 파견공무원 현행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안이 있는데 이 안에 대한 의견도 주십시오. 저희가 인원을 좀 확정하는 게…… 논의해서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제 안에 동의하기 어려워서, 다른 분이……

○**김기표 위원** 파견검사 70명, 파견공무원 140명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치로 늘려서……

○**김기표 위원** 예, 상한선이니까 최대치로 늘려서 거기서 판단하도록 하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특별검사가 판단하도록 하자, 이견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 늘려 놓고 그 안에서 판단하게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의 특검법에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원만하게, 의견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럼 수사기간에 대해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각각의 특검법이 3개가 동일하게 모두 연장을 30일씩 두 번 특검의 판단하에 연장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최초에는 특검 판단하에 30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는 것을 30일 씩 두 번 연장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래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연장은 30일에 한 번만 하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주셔도 되고 나눠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김건희 특검법이 기본 수사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김건희 특검 쪽이잖아요, 일이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기본 수사기간이 120일이다 이렇게 하는 안이 제가 낸 안이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한 번에 걸쳐서 30일 연장하고 또 한 번 연장해서 대통령에 요청하고, 제가 만든 것은 이런 안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본 안에 해야지 사실 일을 빠삭하고, 연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서영교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예. 연장을 한 번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영교 의원님 개정안에 따르면?

○**서영교 위원** 아닙니다. 연장이 원래 두 번 돼 있지 않습니까? 90일에 30일 한 번, 30일 한 번.

○**박은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120일로……

○**서영교 위원** 아닙니다. 90일을 120일로 하고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또 두 번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기간이 더 늘어나는……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30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성윤 위원** 180일이 되는 거지요.

○**장경태 위원** 애초의 기본 수사기간 90일을 120일로 연장하는 안이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연장이 두 가지 방식인데……

○**장경태 위원**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1차, 2차에 걸쳐서 수사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것 중에 2차 수사기간 연장 요건이 대통령 재가 사항이고 특검 자체 판단이 1차 수사기간 연장 요건인데 동일한 요건을 2차로 두 번까지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재가 사항은 3차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있어서 그 표를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김건희 특검법은 그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다른 나머지 2개의 특검은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영교 위원** 저는 사실 특검 기간이 90일 더하기 30일, 그래서 11월 28일에 김건희 특검법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연장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9월 28일 날 기본이 끝난다, 그러니까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이라고 하는 수사기간을 120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당에서 또한 논의해 가지고 30일씩을 한 번 더 연장하게 한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특별히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명태군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특검 3개가 합쳐진 거라서 저는 기본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지금 3개가 함께 가면서 어느 것은 기본이 늘어나고 어느 것은 연장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물으시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장경태 의원이 낸 것처럼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했던 취지는 바로 그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안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수사기간을 30일 늘리는 건데요, 그래도 기존 본 수사기간은 놔두고 특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게 재량을 좀 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80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안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결과적으로 총 수사기간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박은정 위원**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지금 굉장히 방대하고 사실상 수사가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러면 기본 수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만 120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무방한 것 같은데요.

○**서영교 위원**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힘이 좀 실리지요. 지금 우리가 특검보, 파견 검사·공무원을 늘리는데 가서 기본 수사기간에 일을 하는 게 맞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박균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 연장을 두 번 하자는 장경태 의원님안에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이성윤 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이성윤 위원** 저도 기본안은 90일로 가고요. 지금까지 열네 번의 특검이 모두 90일을 기본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세 번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수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라고 약간 호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장안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을 양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양보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서영교 위원**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양보 안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을 잘못했더니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기본은 그대로 두고 연장 두 번 하자라는 위원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안으로 좁혀서 의견 없이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은정 위원** 서영교 위원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시면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서영교 위원님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언제요?

○**소위원장 김용민** 설명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그리면 특검 수사기간은 각 3개의 특검 모두 연장을 30일 플러스 30일,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연장 30일은 그냥 그대로 두고 특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연장하는 안을 2회에 각 30일 연장하는 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기준으로 25페이지, 과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것을 종합해서 전제하면 7조,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안이 대법원의 판례와 거의 유사한 안이고 여기에 제목만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장경태 의원님의 안으로 갈지, 합칠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김용민 의원안으로 해서 제목만 바꾸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게 크게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표현의 문제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의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는 아까 말씀 주셔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의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수사의 특례 신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고 특별검사가 배당받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

는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본인이 철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게 제 안이었군요. 과감하게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다음 페이지의 공소시효의 정지 특례 신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안도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니까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성윤 의원님 안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사건 수사 중에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이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특검 수사기간만 피하면 처벌 안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신을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특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게 하고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의 범위 부분은 아까 대법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공직선거법 268 조에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킬 때에도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특검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국가수사본부에 그 사건을 인계해서 특검의 지휘하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역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은 아까 해외 도피 사법과 마찬가지로 역시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 강조하신 부분을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겨 두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인데요, 형별 등의 감면 규정 신설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감면하고요. 필요적 감면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은 임의적 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걸 필요적 감면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김기표 위원 예, 필요적 감면으로 해야……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기관 의견을 드렸을 때, 사실은 고발의 내용이 어떨지에 따라서 이 감면 사유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의 판단을 재판부가 할 수 있다면 좀 더 감면의 여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안은 수용할 수 있는데요. 필요적 감면으로 하게 되면 모든 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 안을 그냥 수용할 수는 있겠다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의견 제시한 것처럼 고발하는 경우에 고발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감면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고발하는 경우라도 이게 실체

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면 감면을 하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고발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의적 사유로 규정을 해 주시면 재량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합리적인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1호, 3호는 필요적 감면, 2호는 임의적 감면으로 하면 어떨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1호, 3호는 이견은 없고요. 2호에 대해서는 임의적 감면으로 해 주셔야 고발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면 2호를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고발한 자’로 수식어를 앞에다 붙이는 건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 입장은 단순히 타인의 고발이라는 면으로 필요적 감면으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서요, 그것을 임의적 감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필요적 감면으로 한다면 고발이 좀 더 실질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건 임의적 감면으로 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서영교 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김기표 위원**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1·3호는 필요적 감면, 2호는 임의적 감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만약에 2호를 임의적 감면으로 바꾸면 3호보다도 더 기여의 정도가 높아 보이는데 3호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2호를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이 되는 고발을 한 자’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장경태 위원** 요건을 강화하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고발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3호에도 자연스럽게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수사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을, 어차피 고발인 진술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런데 2호는 자칫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감면받으려고 무차별적인 고발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건 맞는 지적 같아요.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건을 아예 강화해도……

○**소위원장 김용민** 요건 강화도 지금 그 자체가 되게 불명확해져 버릴 수 있어서 그냥 명확하게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그러시지요. 나누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부칙에 적용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적용례는 그대로 가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혹시 지금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병섭** 필요적 감면 또는 임의적 감면을 도입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수사를 하고 있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건에 대해서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 취지로 개정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적용하는 것으로.

○**김기표 위원** 당연히 하는 것을 부칙 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저희가 주요 쟁점을 정리는 했는데 하나가 빠진 게……

○**박은정 위원** 김건희 특검법에서 하나 빠진 게 재판 중계 관련해서 제가 아까 10조에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용기 의원안에도 있는, 내란 특검에도 있는 재판 공개 규정도 추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10조 3항에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2조 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그다음에 4항에 ‘재판장은 특별검사,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5항 ‘해당 재판의 경우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3개의 규정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3개의 규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에 추가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지요?

현재 내란 특검법에는 들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집어넣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도 김건희 특검법에 조문을 집어넣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내란 특검법 18페이지에 ‘특별검사는 제2조 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행정처의 공식적인 어떤 서면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서면 통보가 맞나요? 전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기표 위원** 서면만으로 한정하는 게…… 서면 또는 전자적 문서로 전달, 구두로 할 수는 없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에 관한 특정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하면 훨씬 더 명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단서를 넣는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단서 규정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단서 규정을 그러면 집어넣고요.

○**김기표 위원** 서면 아니면 전자적 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적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도록 그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저희가 주요 쟁점들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순직 해병 특검으로 넘어가서 말씀 나온 김에 부칙을 그냥 한 번에 지금 정리를 해 보면……

○**박균택 위원** 죄송하지만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적 감면 사유 있지 않습니까, 24조? 이 부분 관련해서 3호의 취지가 조금 애매한 게 수사·재판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증언, 자료 제출이라고 해 놓고……

○**이성윤 위원** 규명입니다, 규명.

○**박균택 위원** 규명이군요. 그래서 제가 개념이 좀 헷갈려서……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1호하고 3호는 필요적 감면, 2호는 임의적 감면 이렇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이성윤 위원** 그게 명확히 안 돼 가지고……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규명으로 하니까 해결이 됐네요.

○**소위원장 김용민** 김건희 특검법에서 부칙이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눴던 특검보에 대한 부칙 조항에 특검보 부칙이 있고 또 필요적 감면은 조금 전에 적용례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특검 넘어가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올릴 기회를 주시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논의가 될 주제일 텐데 재판의 공개와 중계와 녹음을……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지난번 내란 특검법 때에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반영이 됐고 저희 법원에서도 이걸 수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 사건의 속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국가의 존립에 관한 부분이고 국민의 관심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저희도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직 해병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의견으로서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너무 확대되는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신중한 검토 의견을 밝혔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는 아예 조문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의견 밝힐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기관 입장은 사실은 그러한 원칙과 예외가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의록에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 의견 충분히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법원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서 말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검의 수사대상 확대 및 관련 사건 정의 규정은 아까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리한 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확대 부분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집행,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부분인데 아까 감독은 빼자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부의 의견대로 감독은 빼고 지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수사 장비와 시설의 제공 및 전문가 지원 등 수사 활동의 지원 부분도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의 파견공무원 수는 기간 연장까지 논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라,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이하동문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했고 그게 전용기 의원안이네요. 그러면 제목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항의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도 아까 논의한 대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항의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수사의 특례 신설, 이 부분도 아까 논의한 것처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 되겠지요. 공소시효 정지 특례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항의 재판의 심리·판결 공개 및 중개 혀가 등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신중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장경태 위원 저의 의견은 내란 특검법의 사안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사건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고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도 물론 무게감은 다를 수 있으나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의 생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녹화와 공개 부분만큼은 좀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어떠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은정 위원 그런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모두 재판 중계 공개를 다 규정을 넣는데 채 해병 특검만 특별히 안 넣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별히 국가안보나 군사상 비밀 이런 것들이 채 해병 특검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넣는다면 저는 한꺼번에 같이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박은정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도 전용기 의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항의 특별검사 직무수행 방해에 대한 벌금형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기표 위원 벌금형 신설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게 잠깐만,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에는 없는데 채 해병 특검 법에만 새로 넣자라는 안인 것인데 그렇게 갈지.....

○김기표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동의하신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갈지 한번 보시지요.

○박균택 위원 저는 왜 이것을 굳이 여기에만 이 규정을 두려고 하는지 좀 개정 배경을,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전문위원님, 이 부분 설명.....

○전문위원 박병섭 저도 특별하게 제안 이유나 이런 데서, 일단 직무수행 보장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넣자라는 취지로 제안 이유가 있는데 그 의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제안 이유에 수사 활동과, 그러니까 직무수행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했나요?

○박균택 위원 직무수행 보장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엄벌을 해야 더 직무수행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해를 안 받고? 이게 발의 배경 자체가 조금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과 다른 특검에 맞춰서 그냥 동일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냥 개정하지 않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형벌 등의 감면 규정 신설도 조금 전에 논의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을 하면 되겠지요? 2호를 임의적 감면으로 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한 부칙을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법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윤석열 내란 특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가항의 수사대상 이 부분은 아까 정리한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파견 검사·공무원 기간 연장도 정리된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의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 공소수행 검사·군검사 지휘·감독권 신설은 아까 김기표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 주셔서 정리한 대로 넘어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라항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도 아까 정리한 대로 제 안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바꾸고요.

그다음에 마항의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도 아까 정리한 대로 진행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바항의 각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부분이 있는데 1심 사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중계하라는 그런 개정안이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신중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공식적인 의견은 답변을 드리지 못했고요. 발언 기회를 조금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가능한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종전 내란 특검법 논의에 있어서도 재판의 중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금 형태가 특검이나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그 재판 중계를 허가하는 형태로 규정이 마련이 돼 있었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임의대로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고 허가해야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불허를 하되 그 이유를 밝혀서 선고한다라는 절충안을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재판을 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다 공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적인 판단의 여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난번 내란 특검법에서도 그와 같이 규정이 마련되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러한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중계를 하게 됐을 때에는 종전 논의에서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많이 우려스러워서 이 내란 특검법도 다른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기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 부분 제가 발의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내란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정말 중차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은 앞으로 영구히 이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도 아

셔야 되고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도 알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재판이 중계됐던 것과 동일하게, 그때도 군사·안보 등등이 다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개재판 했고 그게 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란 사건도 중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입법 목적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서를 좀 추가하면 어떨까요? 본문은 ‘1심 재판을 중계하여야 한다’ 의무적 중계로 하고, 다만 재판장…… 재판장이라고 하지 말고 법원이라고 할까요? 재판부라고 할까요? 재판부 혹은 재판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요. ‘재판장, 피고인, 검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분은 도저히 중계를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예외를 둘 때 적어도 피고인과 검사가 법원과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에서는 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두면 어떨까요?

○박균택 위원 그 단서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전체 중계를 다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분 부분 중계를 안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A라는 증인의 증언 중에서 10분부터 15분 사이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중계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A라는 증인 전체에 대해서는 중계하지 않기로 하거나 이런 정도의 부분이지 ‘오늘 재판을 하루종일 중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부를 중계하지 않는 것인니까 이렇게는……

○박균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가안보 등등 사유를 좀 넣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그 사유는 사실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아마 재판을 운영하시는 재판장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형원 차장님의 실력이나 인품이나 최고인 분이기 때문에 저는 배형원 차장님의 지금까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내란 재판 부분은 지극히 재판부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결정을 한다든가 재판 진행 방식을 비공개로 한다든가 윤석열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신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도 사유의 하나로 추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중요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불신을 받고 있는 그 재판부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 감시의 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아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차장님이 공감을 못 하시더라도 그 재판부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는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 올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정말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중계해야 된다가 아닌 아주 제한된 형태로 일부 예외를 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측면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기준에 있는 법안은 보통 중계의 허가를 재판장이 하는 구조입니다. 즉, 특검이 신청을 하거나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중계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특검이 중계 장치를 가져와서 중계하려는 것을 재판장이 허가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인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을 허가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편파적인 진행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계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계 방식은 법원에서 어떠한 장비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줘서 그 중계업체가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중계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마련된 법안이 ‘1심 재판은 중계하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주체가 무엇인지와 그다음에 지금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는 재판이 공판기일 말고 공판준비기일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중계가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좀 둘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진행하는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참고인 성명은 비밀명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게 되면 비프(beep) 음이 들어가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생중계는 불가능하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이후에 배포가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좀 참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란 특검이 시작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기소하게 되면 사건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되고요. 모든 사건을 다 이와 같이 전부 생중계를, 그러니까 특검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 생중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법은 생중계가 아니라 중계이기 때문에 현재가 시차를 두고 중계를 했던—일종의 녹화중계지요—그 방식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특정 부분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법원이 판단해서 하시되 다만 지나치게 그런 것을 빌미로 비공개하고 중계를 안 하는 것으로 자꾸 넘어갈까 봐 저희가 이렇게 법을 부득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태 위원 추가 의견 조금 드리면요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생중계는 어렵다고 보고요.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발 상황이라든지 또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편집기술적 부분이기는 한데 혹여나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음소거 처리되거나 또 핵심 피의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가 있거든요. 녹화중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음영 처리를 하시든 뭐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처리하실까 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그 의견을 담아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음영 처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마치 음영 처리를 해도 될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장경태 위원** 통으로 모자이크 처리하지요. 그러니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김기표 위원**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중계를 의무화하면 누가 그것을 찍을 거냐, 그러니까 표준화한 자료 화면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조문 같은 것에 좀 남기는 것이 어떤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소위원장 김용민** 사실 조문화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중계의 주체가 결국에 법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표 위원** ‘법원은 중계……’ 이렇게 되나요? 아무튼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든……

○**소위원장 김용민** 중계 장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법원이 마련해서 중계 영상을, 녹화 영상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방식이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에서 중계를 하겠다고 했었을 때 허가하는 구조가 하급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법원의 공개변론 같은 것도 선고 영상이라 할지 이런 것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론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면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및 중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선고 장면과 그다음에 공개변론이 이루어졌을 때 모습들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영상을 쭉 중계하는 형태로 대법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급심은 지금까지 언론사가 들어와서 입정하는 모습과 판결 선고 모습을, 언론사가 신청을 하면 허가하는 규정만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규정이 없어서 내란 특검법이 발효된 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하여튼 저희도 속기록에 남겨 두는 차원에서, 법원이 중계의 책임을 지고 중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심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언론이 책임을 지고 중계를 하면 이게 생중계 방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예외 규정 자체도 적용이 안 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법원이 주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성윤 위원** 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법안 워딩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조직법을 보면 ‘재판장의 허가 없이 촬영·녹화·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게 하는 건데 단순히 중계라고 그러면 그 의미가 좀 불명확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나온 것처럼 의무적으로 허가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그 규정은 이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심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아예 중계를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입니다.

○**박은정 위원** 중계와 관련해서 법원 내부 규정의 명칭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원 내부에 중계와 관련해서 중계 장치라든가 규정 명칭이 있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박은정 위원** 대법원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급심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급심과 대법원이 방청·촬영 허가와 중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급심은 언론사에서 중계를 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것을 허가할지 말지에 대한 규정이 담겨져 있고요. 대법원의 규칙은 자체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그것을 중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대법원에도 변론에 관한 규칙은 따로 있고요.

○**박은정 위원** 그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재판을 중계하는 명칭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에다가 특정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내란 재판의 중계와 관련해서 ‘중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계하여야 한다는 방식을 2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의 중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박은정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 그러니까 4항에는 중계하도록 하고……

○**박은정 위원** 대법원의 재판 중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하는 방식, 방식을 좀 특정해 주면……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방식을 좀 특정해서 집어넣어, 그러니까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도로 하거나 ‘중계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러면 저희가 새롭게 규칙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 관한 규칙은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요. 모든 사건을 다 중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은정 위원** 일단은 법에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식만 그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규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실 방식은 여기에 근거 규정을 두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구체적으로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참고로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 보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영상 녹화하는지를 질문했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녹화된 것을,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체 녹화한 것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녹화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녹화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

실상 중계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별도의 중계 조항을 저희가 지금 집어넣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계를 지금처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도의 규칙을 만드셔야 되고 중계 장치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칙으로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행기간을 즉시 시행이 아니라 한 달, 그런데 한 달 내에 중요한 재판 다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범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특검에 중계 신청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특검에 모두 이와 같은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계를 허가한다고 했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분량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란 특검의 경우에 지금 전 대통령 재판만을 염두에 둔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있고 현재도 사실은 1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게 되면 그 모든 사건을 다 중계를 해야 되는, 방금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다 모든 사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취사선택을 해서 사건을 한정한다랄지 아니면 종전처럼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은 재량이 아주 제한된 상태에서 거의 허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저렇게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저 부분을 수용해서 법안의 문구를 특정한다고 하면 특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내란·외환죄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특정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임무종사자의 재판 이렇게 특정하는 것도 조금 범위가 불분명할 것 같고요.

○이성윤 위원 특정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이성윤 위원 아까 박군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구연 재판부의 내란 사건 재판을 보면 다섯 번을 비공개했고 현재 하고 있는 재판도 8명을 재판하고 있는데 도저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변호인들이 변호를 해도 피고인이 주장을 해도 재판부에서 제지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아주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는 정말 이것을 제대로 기록을 해서 우선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역사에 사초로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특정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내란 특검 측에서 지금 현재 규정을 기초로 해서 변론 중계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재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기소될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이 분산이 되고 아울러서 이 특검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이나 순직 해병 특검도 똑같이 중계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 않을

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마 현실적으로는 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을 계속 쓰면서 거기서 중계를 다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여러 개가 기소가 돼도 결국에는 병합심리를 하다 보면 재판부 기준으로는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재판부로 다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커져서 분산되고 많은 사건을 다 중계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역시 대법정 하나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균택 위원** 아까 소위원장님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임무종사자 이상이 포함된,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가 포함된 사건의 재판부 정도로 조금 줍히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이성윤 위원님은 특정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사초로 다 남기자라는 의견이시기도 하거든요.

○**박균택 위원** 그런데 나중에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한꺼번에 기소해서 운영되는 재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다고 치면 보통 사령관들이나 장관급 이상이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테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면 재판 이후에, 공판 이후나 특검 그러니까 검사 측의 요청에 의해서 신청이 있을 시 우선순위를 좀 나눌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 규정은 이미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께서 너무 답답해하시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저도 속기록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기술적 또 자원의 한계 등으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설마 녹화중계라고 해서 1년 뒤에 공개하시고 이럴 건 아니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설마,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 신뢰가……

저는 지극연 판사 때문에 이렇게 사법부가 굳이 불신을 키울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극연 재판부를 보면서 ‘이거 6개월 뒤에, 1년 뒤에,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6개월까지는 아닐 거라는 차장님의 답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구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되 ‘2조 1항 각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 피고인, 검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이성윤 위원** 합의 주체가 검사하고 법원은 가능하겠는데 피고인까지 넣어야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피고인도 사실 중요할 수 있으니……

빼자는 의견이신가요?

○이성윤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동의 안 해서 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지금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맞아요. 피고인이 합의하지 않아서 공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이성윤 위원 아니,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 피고인, 법원 재판부가 합의한 경우에 비공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피고인은……

○소위원장 김용민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공개를 원해서 이 합의를 안 해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워딩의 문제이긴 한데요. ‘재판부가 합의한다’라는 워딩은 사실은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은 ‘피고인과 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런식의 규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규정을 그렇게 좀 문구를 바꿀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합의 형태는 그런 문구가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문구를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내란 특검법에 이 조항이 들어온 이후에 특검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론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발의가 되게 되면 지금 재판이 계속 중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 것 같습니까?

○장경태 위원 한 6개월 걸려 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성윤 위원 아니,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재판 중인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지금 대법원 사건에 한정돼서는 그냥 우리 직원이 뭐 어떻게 찍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건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계를 허가하는 거라면 당사자가 하는 거라서 저희가 허가만 하면 되는데 법원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고 나중에 비실명 처리도 하고 하려면 현재의 인력이나 예산으로서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 업체를 입찰도 해야 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따져 봐야 되는데요.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박은정 위원 그러면 경과규정을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일부……

○**장경태 위원** 아니면 전체회의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좀 파악하고 오셔서 전체회의 때 경과규정 넣으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일단은 유예기간을 한 달로 둘 테니까 내일 의견을 주셔서……

○**김기표 위원** 의견을 일단 가져오라고 하고요. 어떻게……

○**장경태 위원** 가지고 오고 전체회의 때……

○**소위원장 김용민** 오늘 저희가 의결은 해야 되니까 오늘 의결할 것의 부칙을……

그러면 아예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김기표 위원** 일단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의견을 가져오면 전체회의에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전체회의 때 저희가 안건 추가해서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오늘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아예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성윤 위원** 어차피 특검이 신청하면 방송중계를 허용하면 되니까. 방송중계를 허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김기표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허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윤 위원** 설비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것 시행되기 전까지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대로 방송중계를 허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김용민**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4일 날 저희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 유예기간을……

○**법원행정처처장 배형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전체회의 때 처장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공소시효의 정지 특례 규정도 빼는 것으로 아까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형벌의 감면 규정 신설도 아까 논의한 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호는 필요적, 2호는 임의적 감면 그리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적용례 부분을 아까 필요적 감면 부분에 대한 적용례는 지금 현행 진행되는 사건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혹시 놓치거나 빼먹은 건 없겠지요?

○**장경태 위원** 체계·자구 수정 권한은 소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